

## 제2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사항

연번	의안번호	안 건	제안자	접수일자	의결일자	의 결	비 고
1	3328	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2	3329	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수정의결	불입1) 수정안
3	3330	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4	3331	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5	3332	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6	3333	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7	3334	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8	3335	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9	3336	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10	3337	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원안의결	
11	3338	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수정의결	불입2) 수정안
12	3339	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	순창군수	2024. 8. 20.	2024. 8. 28.	수정의결	불입3) 수정안

[붙임1]

**1. 안건 :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**

가. 제 안 자 : 순창군수

나. 접수일자 : 2024.8.20.

다. 심사일자 : 2024.8.27.

라. 의결일자 : 2024.8.28.

**2. 의결 : 수정의결(수정안 첨부)**

#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

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7조제1항 중 “추진할 수 있다.”를 “추진하여야 한다.”로,
- 안 제11조제2호 중 “민간인”을 “군민”으로, 같은조 제3호 중 “주민”을 “군민”으로 수정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사업시행 등)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추진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6.(생략)</p> <p>②~③(생략)</p>	<p>제7조(사업시행 등) ① ----- ----- ---- <u>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~6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포상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순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 <p>1.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</p> <p>2.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·응모하여 선정된 <u>민간인</u></p> <p>3.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 및 <u>주민</u></p>	<p>제11조(포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군민</u></p> <p>3. ----- ----- <u>군민</u></p>

[붙임2]

**1. 안건 :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가. 제안자 : 순창군수

나. 접수일자 : 2024.8.20.

다. 심사일자 : 2024.8.27.

라. 의결일자 : 2024.8.28.

**2. 의결 : 수정의결(수정안 첨부)**

#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4조 중 “관내의 기업제품을”을 “관내의 기업제품이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구매 촉진 지원)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품·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관내의 기업제품을</u>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4조(구매 촉진 지원) ----- ----- ----- <u>관내의 기업제품이</u> ----- -----

[붙임3]

**1. 안건 :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**

가. 제 안 자 : 순창군수

나. 접수일자 : 2024.8.20.

다. 심사일자 : 2024.8.27.

라. 의결일자 : 2024.8.28.

**2. 의결 : 수정의결(수정안 첨부)**

#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6조제2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가. 교육·홍보 부문
  - 나. 농업·생활 부문
  - 다. 산업 부문
  - 라. 수송 부문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저감대책 수립·시행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.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<신 설>	제6조(저감대책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1. ----- 2. ----- <u>가. 교육·홍보 부문</u> <u>나. 농업·생활 부문</u> <u>다. 산업 부문</u> <u>라. 수송 부문</u>